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76

발의연월일: 2022. 8. 23.

발 의 자:배준영·최춘식·박대수

윤창현 · 김영선 · 양금희

송석준 • 조수진 • 박성중

김예지 · 조은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2012년도에 개관한 부산광역시 소재 국립해양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하여 2014년도에 제정·시행됨으로써 현재 해당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인천광역시에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건립되고 있는 점과 향후 지역별 국립해양박물관이 건립될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제명 및 국립해양박물관의 설립 근거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개정함과 동시에, 타 입법례에 비추어 박물관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고, 매년 실시되는 경영실적평가와 3년마다 이루어지는 종합감사 등을 고려할 때 박물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현행 운영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박물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 제명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 나. 해양박물관의 종류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인 천해양박물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 다. 박물관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여 규정함(안 제8조).
- 라.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박물관 운영평가 제도를 폐지함(안 제19조 제2항 삭제).
- 마.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에 따른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부칙 제3조 등).

법률 제 호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해양박물관법"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국립해양박물관을 설립하여"를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를 "발굴·보존·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종류 및 법인격)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박물관을 설립한다.

- 1. 국립해양박물관
- 2. 국립인천해양박물관
- ② 제1항의 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제2조제1항제1호의 국립해양박물 관 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관장"을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 중 "국립해양박물관이"를 "박물관이"로, "국립해양박물관 또는"

을 "국립해양박물관·국립인천해양박물관 또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립해양박물관"을 "국립해양박물관·국립인천해양박물관"으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 제3조(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 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인 천해양박물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국 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수산부장 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설립위원회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 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설립 당시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

- 으로 박물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⑥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설립될 때까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 제4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국립인천 해양박물관 건립·운영에 한정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국립인천해양박물관 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에 속한 권리·의무(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운영에 한정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제6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 관은 설립 당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운영에 한정한다)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 이후 최

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예산서는 설립위원 회가 작성할 수 있다.

- 제8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립인 천해양박물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않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인천해양박물관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국립해양박물관법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박 제1조(목적) -----국립해양박 물관을 설립하여 해양문화와 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보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 보존·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 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로 수행하여-----하다. 제2조(법인격) 국립해양박물관(이 제2조(종류 및 법인격) ① 국가는 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 다음 각 호의 해양박물관을 설 으로 한다. 립한다. 1. 국립해양박물관 2. 국립인처해양박물관 ② 제1항의 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하다. 제6조(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업 제6조(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업 무의 대행) 제2조제1항제1호의 무의 대행) 관장은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대행한다. 국립해양박물관 관장-----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제8조(임원의 임기) ① <u>관장</u> 의	임
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	로
연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수 있다.
- ③ (생략)

제19조(감독) ① (생 략)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u>국립해양박물관이</u> 아닌 자는 <u>국립해양박물관 또</u>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 하여 <u>국립해양박물관</u>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생 략)

제8조(임원의	임기)	1	<u>임원</u> -	
<u><삭 제></u>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u>박물관이</u>
- <u>국립해양박물관·국립인천해양</u>
박물관 또는
제26조(과태료) ①
국립해양박물관·국립인천
해양박물관

② (현행과 같음)